

스웨덴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

박 현 숙**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 자녀들의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언어교육정책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이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정체성과 문화전통이 인정되어 그들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조화롭게 적응하여 통합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언어교육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다인종 가정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중/다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국어교육과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스웨덴의 현재 언어현황과 학교교육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며 또한 다문화 언어교육정책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한국 언어교육정책의 연구와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주제어: 스웨덴, 학교교육제도, 다문화 언어교육정책, 모국어교육,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교육

1. 들어가기

1990년대 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가 급증하면서 단일민족 국가이었던 한국은 최근 급속하게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매년 국내 출산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다인종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급증과 함께 학령기 다문화 아동들도 증가하고 있다(이철호, 2008; 변광수, 2008; 이해영 외, 2010). 2016년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국제결혼가정 + 외국인가정) 아동의 수는 109,387명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¹⁾. 같은 해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화 학생 수는 베트남이 2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22.2%, 필리핀 12.0%, 중국 동포(조선족) 11.3%, 일본 10.5% 순이다(황정원, 2016). 이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이들을 주류사회로 통합하는 문제가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사회, 문화, 교육 적응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철호, 2008; 변광수, 2008; 이해영 외, 2010).

특히 학령기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언어문제로 학업, 문화적응, 정체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2008년 한국의 다문화 가정 아동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많은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들의 자녀들은 학습능력과 언어능력 부족으로 학교 교과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어 과목 중

1)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수는 계속 증가세에 있으며 2017년 기준 학교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3.1%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1.2%로 0.2%p, 고등학교는 0.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인다.

쓰기와 읽기가 취약하다(이철호, 2008). 또한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많은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혼란스러운 정체성 교육으로 인하여 자녀들 또한 대부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성상환, 2009b).

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다문화 언어교육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모국어교육은 다문화 통합정책의 방편으로 UNESCO, UNICEF, EU²⁾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와 서구 선진 유럽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통합정책이란 이주국에서 이주민의 문화를 배제하면서 이주국의 문화적 습득만 강조하는 기존의 동화 정책과는 달리 이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주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정책이다(김이선 외, 2007). 이미 많은 연구들도 모국어교육이 문화적응이나 학업 성취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강종훈·전주성, 2014; 우영경·김은하, 2016; Berglund 2017; Kim, 2015; Wirén, 2009).

한국의 경우 2006년부터 통합정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교육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 한국어교육만 강조하는 동화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민무숙외, 2009). 그리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도 이주민의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모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2010년대부터 모국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부 연구들(강종훈·전주성, 2014; 우영경·김은하, 2016; 윤석룡, 2012)이 수행되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수의 학교에서 모국어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³⁾. 그런데 국내 연구들은 “이중언어 교사 양성”이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측면에서만 수행되는 단일차원에서 연

2) 유네스코(UNESCO)는 매년 2월 21일을 ‘국제 모국어 날’로 지정하여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며 모국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고 있으며 EU에서는 ‘모국어+2’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조기에 모국어 이외의 2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권순희, 2009).

3) 서울시나 부산시는 한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경우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2010년부터 확대되고 있다(중앙일보, 2015년 7월 15일/ 오마이뉴스 2013년 2월 28일).

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제도나 정책, 프로그램 효과성과 같은 거시적이고 다각적 측면에서는 아직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제도화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다문화배경(invandrarbakgrund/utländsk bakgrund)-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스웨덴에서 출생하였으나 양쪽 부모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을 가진 사람들이 총 인구의 약 23%에 달하는 스웨덴은 공식어인 스웨덴어교육 이외에도 이중/다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의 모국어교육과 스웨덴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모국어교육은 통합정책의 방안으로 1977년에 의무화 되면서, 다문화배경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와 가치, 종교, 언어를 유지할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Wirén, 2009)⁴⁾. 현재 스웨덴의 모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문화적응능력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erglund,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스웨덴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다문화 언어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한국 사회가 언어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스웨덴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배경을, 제2장에서는 스웨덴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재 언어현황과 학교교육제도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스웨덴의 이민역사와 스웨덴의 통합정책과 다문화 언어교육정책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다문화 언어교육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모국어교육과 이들을 위한 스웨덴어교육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4) Swedish integration policy - Government.se

2. 스웨덴의 언어와 학교교육제도

2.1 스웨덴의 언어

스웨덴에는 공식어인 스웨덴어 이외에 소수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수 민족언어와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이민자어가 있다.

(1) 공식어 스웨덴어

스웨덴어는 스웨덴의 주요 공식어이며 2015년 에트노로그(Ethnologue)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어를 모국어, 즉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스웨덴의 880만 명, 핀란드 내의 30만 명, 유럽과 미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스웨덴인들을 포함하여 약 920만 명이다⁵⁾. 제2언어로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약 310만 명으로 모두 합하면 스웨덴어 사용자수는 약 1,200만 명이다.

(2) 공식 소수민족언어(minoritetspråk)

스웨덴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소수민족이 있는데 사미인⁶⁾, 집시인, 유대인, 스웨덴계 핀란드인, 노르보텐(Norrbottn)지역에 거주하는 핀란드인 토르달렌인(tornedalingar)들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사미어(samiska), 로마니(romani chib), 이디쉬어(jiddisch), 핀란드어(finska), meänkieli가 2010년부터 공식 소수민족언어로 인정되어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⁷⁾. 또한 스웨덴어 수화가 공식 소수민족언어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스웨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소수민족들의 문화, 언어, 종교 및 역사에 관

5) 스웨덴어는 핀란드에서 핀란드어와 함께 공용어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13세기에서 1809년까지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던 핀란드는 1600년 대 경 총 인구대비 스웨덴 계 핀란드인 비율이 약 18% 이었으나 그 후 점차 감소되어 현재는 약 7%정도이다.

6) 사미인들은 원주민(urfolk)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7) 소수민족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는데 예를 들면 거주민 대다수가 핀란드어, meänkieli, 사미어를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관공서에서 이 언어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 배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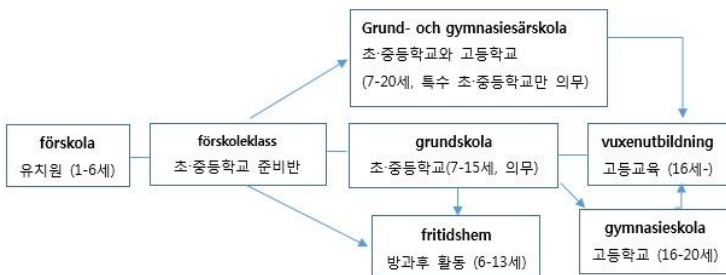
(3) 이민자어 (invandrarspråk)

2016년도 인구통계에 따르면 이민자 그룹, 즉 다문화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약 230만으로 총 인구 중 23.2%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어 외에 150-200개의 언어가 이민자들의 모국어/제1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이민자 그룹의 모국어 별 분포를 살펴보면 핀란드어 화자(약 18만 명)가 가장 많으며, 아랍어(약 16만 명), 세르보·크로아티아어(약 13만 명), 쿠르드어(약 8만 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Parkvall, 2016).

2.2 스웨덴의 학교교육제도

스웨덴의 학교교육제도(이하 학제)는 크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기초학교교육과정(9년, *grundskola*),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중등교육과정(3년, *gymnasieskola*), 전문대와 대학으로 구성되는 (고등)성인교육과정(*vuxenutbildning*) 으로 나뉜다⁸⁾ (그림 1 참조).

<그림 1> 스웨덴의 학제 시스템(출처: Skolverket)



8) 기초교육과정부터 (고등)성인교육과정까지 모두 무상교육이다.

(1) 유치원(förskola)과 초·중등학교 준비반(förskoleklass)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준비반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1세 때부터 지방자치단체(kommun, 이하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보모 (dagmamma)에게 맡겨질 수 있으며 6세가 되면 대부분 초·중등학교에 부설된 준비반에 다니게 되는데 지자체는 6세 아동의 준비반 입학울 보장한다.

(2) 초·중등학교(grundskola)와 방과 후 활동(fritidshem/fritids)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1학년에서 9학년까지 총 9년이며 초등단계(lågstadiet), 중등단계(mellanstadiet)와 고등단계(högstadiet)로 나뉜다. 초등단계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중등단계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국의 중학교 과정인 7학년에서 9학년은 고등단계이다.

방과 후 활동은 자율적으로 부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기타 이유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1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지자체는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한다.

(3) 고등학교(gymnasieskola)

고등학교는 16-20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은 아니다.

(4) 특수 초·중등학교(grundskolan)와 특수 고등학교(gymnasieskolan)

특수 초·중등학교는 7-15세 사이의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학교이며 특수 초·중등학교를 수료한 후 4년제인 특수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5) (고등)성인교육(vuxenutbildning för unga vuxna)

초·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에 부족한 과목과 과정을 보완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으로 구직, 직업교육 및 대학진학이 목적이다.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결합할 수 있으며 모두 무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이 있다.

- **입문프로그램(introduktionsprogram)**
입문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국가프로그램에 입학할 자격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svenska för invandrare, SFI)**
16세 이상의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스웨덴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웨덴어 교육과정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지자체 성인교육기관 (Komvux)에 속하며 개인별 맞춤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4.2.3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SFI 참조).
- **지자체 성인교육기관(kommunal vuxenutbildning, Komvux)**
Komvux는 초·중등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개인별 맞춤 교육형태이지만 일반대학·실업전문대학 입학이나 구직을 위한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 **성인고등학교(folkhögskola)**
성인고등학교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와 Komvux 의 대안으로 대학이나 직업전문대학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 초·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다.
- **직업전문대학(yrkehögskola)**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직장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 **대학(universitet & högskolor)**
한국의 대학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다.

- 성인특수교육기관(särskild utbildning för vuxna, Särvux)
발달 장애가 있는 20세 이상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개인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적절하게 조정해준다.

3. 입국이민 국가로서의 스웨덴

3.1 스웨덴의 이민역사

1850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스웨덴은 빈곤 등의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이민을 떠났던 출국이민 국가이었으나,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북구, 발트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망명이민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부 유럽으로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하기 위한 취업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입국이민 국가가 되었다. 1960년대 말에는 새롭게 도입된 규제 이민정책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1970년대 이민정책이 변화되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이민은 대부분 망명이민과 가족 상봉 이민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보스니아 전쟁으로 인해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들에서 대규모의 전쟁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정치·종교 난민의 유입과 유학생, 해외입양 및 노동이민의 증가로 스웨덴의 이민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변광수, 2009; Hyltenstam & Milani, 2012).

3.2 스웨덴의 통합정책과 다문화 언어교육정책

1950년대와 1960년대 스웨덴에서는 노동이민의 증가로 이주노동자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의 언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1972년 이주노동자들은 법(SFS, 1972: 650)에 의해 240시간의 스웨덴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이 법은 후에 (성인)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1975년에는 이민자들을 스웨덴 사

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3가지 원칙 - 스웨덴국민과 이민자들간의 평등과 유대 그리고 이민자들의 스웨덴 사회동화와 이민자 문화와 언어 보존에 관한 선택의자유 - 에 바탕을 둔 “이민과 소수민족에 관한 법안(Prop, 1975: 26)”이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통합정책의 목적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스웨덴 국민의 일원으로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발전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이민자 스스로 스웨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동질성과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후에 이 통합정책 법안은 이민자·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모국어교육과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교육 도입에 기반이 되었다(Hyldenstam & Milani, 2012). 1960년대에 이미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가 이민자·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스웨덴어 발달을 돕는 보조 교과목으로 도입되었지만, 자체 교과과정을 갖춘 독립 교과목으로 설립하자는 제안은 정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승인되지 못하다가 1994년 드디어 승인되었다(SFS, 1994: 1194). 공식 언어로서 스웨덴어를 보장하고 있는 언어법(SFS, 2009: 600)이 스웨덴어를 배우고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국어를 발달시키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75년에 시행된 통합정책이 구축된 3가지 기본 원칙이 현재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이주민 언어교육은 이중 언어교육으로, 다문화 통합정책의 핵심이다. 이는 스웨덴어 이외에 개인의 모국어를 습득하여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언어를 통한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안정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스웨덴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

스웨덴의 학교는 다문화 학교로 학생들의 모국어는 스웨덴어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급 학생 모두가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단지 몇 명만 이 그룹에 속한다. 교육청통계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약 20%가 다문화 가정 아

동으로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다⁹⁾(Skolverket, 2011).

스웨덴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민자·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언어교육으로는 이들의 모국어교육과 스웨덴어교육이 있다(Hyltenstam, 2007; Hyltenstam & Milani, 2012; Hyltenstam & Lindberg, 2013).

4.1 모국어교육(modersmålsundervisning)

망명이민과 취업이민으로 오래 전에 다문화 사회가 된 스웨덴은 학교에서 스웨덴어 이외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접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1975년 스웨덴 정부는 이민·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임명한 후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이민·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였다(DsU 1975:13; Löfgren, 1986). 이 제안에서 이민·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균형 있는 이중언어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국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안서가 1977년 의회에서 통과된 가정언어개혁(hemspråksreformen)의 기초가 되었으며 1977년부터 이민·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스웨덴어가 아닌 언어(모국어)를 가정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언어가 가정 밖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1997년 가정언어(hemspråk)에서 모국어(modersmål)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스웨덴 교육청(Skolverket)에서 명시한 모국어 수업의 목적은 학생의 언어 지식을 발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자부심, 이중문화정체성과 문화능력을 가진 이중언어인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교과목 모국어는 모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모국의 발전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스웨덴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모국어 학습지도와 수업은 스웨덴어를 배우는 동시에 다른 교과목의 지식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9) <http://modersmal.skolverket.se/site/sevnska/index.php/178-sensteheter>

교육청통계에 따르면 2009년/2010학년 모국어가 스웨덴어가 아닌 아동들은 약 173,000 명으로 이 중 약 93,000(53%)이 모국어교육에 참가하였다 (Skolverket, 2011). 같은 해 모국어교육이 실행된 언어로는 아랍어(20,900명), 보스니아/크로아티아어/세르비아어(6,870명), 쿠르드어(6,240명), 소말리아어(6,220명), 스페인어(5,240명), 영어(4,525명), 알바니아어(4,270명), 이란어(4,050명), 핀란드어(3,820명), 터키어(3,450명) 순이다¹⁰⁾.

4.1.1 모국어의 정의

모국어(modersmål)는 여러 가지로 정의 될 수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정의 (Abrahamsson, 2009: 13)에 의하면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습득하는 언어를 모국어라 하며 동의어로 제1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¹¹⁾. 이에 반하여 제2언어란 일반적으로 제1언어를 습득한 후 학습하여 구사하는 언어를 말한다¹²⁾.

4.1.2 모국어교육의 중요성

오랫동안 이민자/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모국어교육이 주류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2언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 아동들의 모국어가 제2언어 학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Börestam & Huss, 2001; 성상환, 2009a)¹³⁾.

-
- 10) 동일한 모국어를 구사하는 아동들의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모국어와 스웨덴어가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룹이나 반을 편성할 수 있다.
 - 11) 모국어는 한 개일 수도 있으나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의 아이들은 모국어가 두 개일 수도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모국어가 다를 수도 있다. 언어를 한 개 이상 구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창하게 구사하는 언어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드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구사능력이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때 언어능력보다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Börestam & Huss, 2001).
 - 12) 2015년부터 소수민족언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본인의 모국어를 제2언어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 13) Abrahamsson(2009)은 스웨덴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데 스웨덴어가 방해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없기 때문에 모국어가 제2언어 학습을 저해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모국어교육이 이들의 모국어 개발뿐만 아니라 제2언어인 스웨덴어의 발달에 모두 중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Håkansson(2003)은 자신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아동들이 스웨덴어도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스웨덴어 학습을 위해서는 모국어교육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학교에서 스웨덴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아동들에게는 이들의 모국어가 스웨덴어 학습과 기타 학교 교과목 공부에 최선의 학습 도구이며 높은 학습 단계에서도 계속적으로 학습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모국어 또한 학교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언어는 또한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로 모국어는 이중언어 아동들의 정체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Ladberg, 2000). 스웨덴 교육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모국어 개발이 아동들의 안정적인 정체성 강화는 물론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4.1.3 모국어교육의 체계

이민자·다문화 가정 아동이 모국어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양육권자 중 최소한 한 명이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모국어이어야 하며 아동은 이 언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2014년 6월4일 국회에서 초·중등학교, 특수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경우 모국어 기초지식이 없어도 모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되어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모·양육권자가 초·중등학교 교장에게 모국어교육을 신청하며 모국어교육이 실시되려면 소속 지자체에 최소한 5명의 동일한 모국어교육 신청자와 적절한 모국어교육 교사가 있어야 한다¹⁴⁾. 일반적으로 모국어교육은 한 언어에만 해당하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모국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4) 소수민족 아이들과 입양아의 경우 학생 수가 5명 미만이거나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모국어교사의 적절성 및 모국어교육의 정도는 학교에서 결정하게 된다.

(1)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준비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준비반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협력해야 한다(Skollag, 2010: 800). 아이들의 모국어 발전을 위해 놀이와 교육활동, 환경과 학습 자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직원·교사, 모국어 보조교사 등을 채용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부모들을 위하여 10개의 언어로 된 유치원 커리큘럼, 교사들의 이중언어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료 등이 준비되어 있다.

2011년 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 중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가진 아이들이 18.7%를 차지한다. 이 중 21.5%가 모국어를 발전할 기회를 이용하였다. 초·중등학교 준비반의 경우 2016·2017학년에는 31,327명 중 12,379명이 이 기회를 이용하였으며 매년 유치원과 기초학교준비반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2) 초·중등학교

모국어교육은 초·중등학교 자율과목으로 학교는 모국어교육에 관한 규정에 관해 공지해야 하며 학생과 부모·양육권자는 모국어수업을 적극적으로 희망해야 한다. 이는 특수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국어교육의 실행은 교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학생 수가 많지 않을 경우 다른 학교와 협업할 수도 있다. 모국어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 정규수업 외 수업으로 일주일에 약 1시간씩 행해지고 있다.

2011년 교육청통계에 따르면 2009년·2010학년에 약 173,000명 중 92,000명, 약 53%가 초·중등학교에서 모국어교육을 받았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세에 있다.

(3) 고등학교

초·중등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모국어를 공부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 중 개인 선택, 언어선택 (현대어) 혹은 수업시간 외 학업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는 학생 수와 재정에 따라 모국어교육을 다양하게 제공

한다. 스웨덴어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최근 입국 이민 청소년들은 이들의 모국어로 학습지도(studiehandledning på modersmål)를 받을 수 있다¹⁵⁾. 2011년 교육청통계에 따르면 2009/2010학년 약 12,400명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약 6,528명, 약 52%가 모국어교육을 이수했다.

(4) 특수 초·중등/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특수 초·중등학교, 특수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도 모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4.1.4 모국어교사

모국어교사는 모국어교육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나 지역 출신이어야 하며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모국어교사의 적절성은 학교가 결정한다. 교육청은 양질의 모국어 지도와 모국어교육을 위하여 자격 있는 우수한 교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대학들과 협력하여 모국어교사를 위한 교수법과 이중언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4.2 스웨덴어교육

스웨덴어가 모국어인 (주류사회)아동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 이외에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문화 가정 아동/학생/이민자 성인들을 위한 스웨덴어교육이 있다.

4.2.1 입국 이민 청소년들을 위한 스웨덴어(svenska för nyanlända elever)

정치 망명, 가족 상봉, 노동 이주 등의 이유로 학교에 다녀야 할 연령에 스웨덴에 입국한 청소년들을 입국 이민 청소년이라 부르며 이들 대부분은 스

15) 모국어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해야 되며 학생은 충분한 모국어 지식이 있어야 한다.

웨덴어 기초 지식이 없다¹⁶⁾. 입국이민청소년들의 배경은 매우 다양하며 스웨덴 학교를 시작하기 전 개인별 학교 교과목의 지식 정도도 다르다. 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입국이민청소년들 각 개인의 지식을 상세하게 조사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에 알맞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Skolinspektionen, 2011). 6-15세 미만 입국이민학생들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16-18세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지자체에 따라 입국이민청소년들만을 모아 교육을 하거나 도우미를 갖추어 일반 학급에 바로 통합하여 교육하기도 한다.

2013년 이민국(Migrationsverket) 통계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을 포함하여 매주 약 2,000명의 외국인들이 스웨덴에 입국하고 있는데 이 중 많은 수가 입국이민청소년들이다. 이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이들의 효율적인 스웨덴어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2016년 입국이민청소년 교육을 위한 학교지도자, 의무교육기관, 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1) 초·중등학교

15 세 미만의 입국이민청소년들은 스웨덴 학교에 다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에서 스웨덴어를 배우게 된다. 지자체는 각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평가 판단 후 이들의 지식 수준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과목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청통계에 따르면 2015학년 초·중등학교의 입국이민청소년의 수는 62,400명에서 2016학년 79,000명으로 약 27%가 증가하였다.

(2) 고등학교/성인교육

16세-18(20)세의 입국이민청소년들은 후에 고등학교 프로그램이나 교육과

16) 입국이민학생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nyanlända, sent anlända, sent kommande, flyktingbarn, asylsökande barn, nyanlända elever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해당한다. 용어들이 포함하는 대상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이들 모두 스웨덴에 최근 입국하여 스웨덴 학교에 처음으로 다닌다는 공통점이 있다(Bunar, 2010). 최근에는 이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으로 ‘입국학생들을 위한 스웨덴어 (svenska för nyanlända)’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스웨덴어에 초점을 맞춘 언어입문 (språkintröduktion) 프로그램에 배치된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지식수준에 따라 설계되며 스웨덴어 외에 다른 고등학교 교과목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

성인고등학교(folkhögskola)에서도 최근 스웨덴에 온 입국이민청소년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4.2.2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svenska som andraspråk, SVA)

1970년대 이미 SVA가 초·중등학교 교과목으로 승인되었다. 1995년에는 성인교육에 필요한 주요 교과목이 되었으나(Tingbjörn 2004), SVA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으로 스웨덴어보다 낮은 단계의 교과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Hyltenstam, 2007).

SVA 교육의 목적은 스웨덴어가 모국어인 학생들과 동일한 스웨덴어 수준에 도달하게 하여 이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스웨덴 사회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Skolverket). SVA 교육은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나 스웨덴어가 모국어이나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들, 또는 양육자 중 한 명과 스웨덴어로 대화를 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으로 SVA 교사가 개인별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속 학교 교장이 결정한다. 학생이 요구되는 스웨덴어 수준에 도달하면 교장의 결정에 따라 제1언어로서의 스웨덴어(이하 스웨덴어, svenska)를 공부할 수 있다¹⁷⁾. 교과목 스웨덴어와 궁극적인 학습목표는 동일하지만 SVA는 스웨덴어의 기본지식 학습에 초점을 두고 각 개인의 다양한 요구(예, 스웨덴어 단계)에 맞추어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스웨덴어 교과목과 다르다.

17) 한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모국어인 스웨덴어인 학생들의 언어실력에 도달하려면 보통 5-10년이 걸린다고 한다(Collier & Thomas, 2002). 초·중등학교에서 SVA 과목을 9년 동안 공부한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스웨덴어 과목을 선택할만한 수준의 스웨덴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1) 초·중등학교

스웨덴어를 처음으로 접하거나 기초 지식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으로 스웨덴어 지식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스웨덴어 교과목을 대체한다. 학생 개인의 언어능력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며 스웨덴어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수업시간의 양도 동일하다. 스웨덴어와 마찬가지로 3학년, 6학년과 9학년에 학력고사(nationellt prov)를 전국적으로 치르며 이 시험은 교사의 성적 평가에 기초가 된다.

(2) 고등학교

스웨덴어 대신에 SVA를 개인선택(individuellt val) 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대학진학에 스웨덴어와 SVA는 동등한 자격조건을 갖는다¹⁸⁾.

(3) 대학교: SVA 전문교사 양성 교육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SVA 교사들의 대학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3년 사범대학에서 SVA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다가 1987년부터 대학에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 SVA 교사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¹⁹⁾. 현재 총 18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SVA 교육을 실시한다.

4.2.3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svenska för invandrare, SFI)

16세 이상의 성인 이민자들을 위한 스웨덴어 기초 교육과정인 SFI는 소속 지자체 성인교육기관인 komvux가 담당하며 성인교육센터(studieförbund)나 성인고등교육기관(예, folkhögskola, Särvux) 등에서 SFI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Carlson, 2013; Sundgren, 2016).

SFI는 개인 배경, 지식이나 학습목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교육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시점이 다르다. 직장이나 사

18)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스웨덴어와 SVA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지만 초·중등학교에서는 한 과목만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

19) 대학은 또한 일선 교사들이나 일반 대학생들을 위하여 SVA 전문교사 교육과정과 다르게 개별 SVA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회 등 생활 전반에서 사용되는 스웨덴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수업은 일주일 15 시간 동안 진행된다. 스웨덴어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읽기와 쓰기 학습은 본인의 모국어나 다른 언어로도 행해질 수 있다.

4주간의 예비반(introduktionsklass)을 마친 후 모국어로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 학교 공부에 비교적 익숙한 사람들로 학생의 교육 배경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교육이 진행된다. 직장, 직업 실습, 고등학교 교육, 성인을 위한 특수교육(Särvux) 등과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다.

SFI 교육을 위해 개발된 특별 교재로 교육을 하며 2010년부터 스톡홀름대학 사범대학부에서 처음으로 SFI 전문교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²⁰⁾.

4.2.4 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svenska som främmande språk)

스웨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스웨덴어(svenska som främmande språk/Swed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육으로 소속 대학 스웨덴어 학과에서 실시한다.

5 맺음말

스웨덴의 이민정책은 다양한 이민자의 문화전통을 인정하며 스웨덴의 사회와 문화에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변광수, 2008).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 중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모국어교육과 스웨덴어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1977년부터 스웨덴어가 모국어/제1언어가 아닌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모국어교육이 이들의 모국어 발달뿐만 아니라 제2언어인 스웨덴어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정식으로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

20) 2010년 이전 대학에서 제공하는 SVA 교사와 SFI 교사 양성 교육은 별 차이가 없었다.

게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모국어 발달뿐만 아니라 이중문화 정체성과 문화능력을 갖춘 이중언어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모국어교육의 목적이다. 모국어교육은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지식을 갖고 있는 자격 있는 모국어교사가 교습을 담당한다.

다문화 언어교육정책 중 스웨덴어 교육은 크게 3가지로 세분화 된다: 학교에 다녀야 할 연령에 스웨덴에 입국하는 입국이민청소년들을 위한 스웨덴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 SVA 와 (성인)이민자들을 위한 스웨덴어, SFI이다. 이들의 스웨덴어교육은 지자체가 학교법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의 목표 이행에 책임을 갖게 되며 소속교육기관(예,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장과 교사는 학생 개인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연령, 지식수준에 알맞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이수한 교사들이 스웨덴어 교습을 담당한다.

최근 급속하게 다문화/다인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언어정책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변광수, 2008, 2009; 이철호, 2008; 이해영 외, 2010).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언어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로 관심 있는 일부 정부기관, 학교, 사회 및 종교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성상환·서유정, 2009). 다문화 가정 아동과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성공적인 언어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을 위해선 연령, 수준, 개인의 배경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물론 이들의 모국어교육 실행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 전에 다문화 사회가 된 스웨덴은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 (중도)입국이민 청소년들과 성인 이민자들을 위해 세분화된 언어정책을 수립한 후 교육청이 정책 수행을 주관하고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책임을 맡아 실행하고 있다. 이 주민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한국의 다문화 언어정책도 국가차원에서 결정되어 재정을 지원하고 사회 및 종교단체, 민간기업이 아닌 지자체가 책임기관으로 언어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민간 봉사자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등 관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교사가 언어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스웨덴의 다문화관련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는 매년 다양한 이민자의 유

입으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다문화 언어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본 논문에서 스웨덴의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 모국어교육과 공식어인 스웨덴어교육 정책에 대한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로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층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모국어교육과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교육, (중도)입국이민 청소년들의 스웨덴어교육과 (성인)이민자들을 위한 스웨덴어교육 등 스웨덴의 언어교육 전반에 걸친 보다 심도 깊은 분석과 논의를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중훈, 전주성. 2014. “초등학교 이중언어강사의 다문화교육 경험 탐색 및 시사점: 서울시를 중심으로”, 『교원교육』, 제30권. 제3호. pp. 1-19.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 민무숙, 김이숙, 이춘아, 이소영. 2009.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 여성 정책 개발원.
- 변광수. 2008. “이민자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국어 생활 논단』, pp. 183-186.
- _____. 2009. “스웨덴의 이민 2세를 위한 모국어 교육”,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0호. pp. 1-19.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 우영경, 김은하. 2016.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능력이 적응유연성 및 문화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제 9권. 제 3호. pp. 63-8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 윤석룡. 2012. “초등학교 이중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다문화교육』, 제 3권 2호. pp. 75-100.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 이철호. 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pp. 43-55. 한국교육개발원.
- 성상환. 2009a. “독일의 이민전통과 언어/외국어교육정책”, 『외국어교육연구』, pp. 62-77.
- 성상환. 2009b. “서울시 다문화가정 아동교육지원 및 과제”, 『서울시 여성 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pp. 3-15.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성상환, 서유정. 2009. “독일의 다문화 언어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적 고찰”,

- 『독어교육』, 제46호. pp. 7-35.
- 이해영, 김영규, 박선희, 이준호. 2010. 『다문화 사회의 언어정책 사례와 효과 조사 연구』.
- 황정원. 2016.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 현황”, 『교육개발』, 197호. pp. 7-35. 한국교육개발원.
- Abrahamsson, Niklas. 2009. *Andraspråksinläring*. Lund: Studentlitteratur.
- Berglund, Jenny. 2017. *Education Policy - A Swedish Success Story? Integration of Newly Arrived Students into the Swedish School System.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 Bunar, Nihad. 2010. *Nyanlända och lärande. En forskningsöversikt om nyanlända elever i den svenska skolan*. Vetenskapsrådets rapportserie 6: 2010.
- Börestam, Ulla and Huss, Leena. 2001. *Språkliga möten. Tvåspråkighet och kontaktlingvistik*. Lund: Studentlitteratur.
- Carlson, Marie. 2013. “Sfi och sif-läromedel i tid och rum - föreställningar, politik och tisanda”, Hyltenstam & Lindber(red.), *Svenska som andraspråk - i forskning, undervisning och samhälle*. 2:a upplaga. Lund: Studentlitteratur. pp. 817-856.
- Collier, Virginia and Thomas, Wayne. 2002. *A national study of school effectiveness for minority language students' long-term academic achievement*. Final report: Project 1.1.
- Hyltenstam, Kenneth. 2007. “Modersmål och svenska som andraspråk”, *Att läsa och skriva - forskning och beprövad erfarenhet*. Skolutveckling: Liber.

- Hytenstam, Kenneth and Milani, Tommaso. 2012. "Flerspråkighetens sociopolitiska och sociokulturella ramar", *Flerspråkighet - En forskningsöversikt*. Vetenskapsrådets rapportserie 5: 2012, pp. 17-152.
- Hytenstam, Kenneth and Lindberg, Inger. 2013. *Svenska som andraspråk - i forskning, undervisning och samhälle*. 2:a upplaga. Studentlitteratur.
- Håkansson, Gisela. 2003. *Tvåspråkighet hos barn i Sverige*. Lund: Studentlitteratur.
- Kim, Young-Mi. 2015. "The Rise of English-Only Law", *Support of Restoring Bilingual Education*. Dongguk Law Review.
- Ladberg, Gunilla. 2000. *Skolans språk och barnets - att undervisa barn från språkliga minoriteter*. Lund: Studentlitteratur.
- Parkvall, Mikael. 2016. *Sveriges språk i siffror. Vilka språk talas och av hur många?* Stockholm: Morfem.
- Skolinspektionen. 2011. *Litteraturoversikt för modersmålsundervisning och tvåspråkig undervisning i de nationella minoritetsspråken*.
- Sundgren, Viktor. 2016. "Swedish Language for Immigrants(SFI): Some reflections on Motivation", *Scandinavian Studies*, No. 18, pp. 73-92.
- Tingbjörn, Gunnar. 2004. "Svenska som andraspråk i ett utbildningspolitiskt perspektiv - en tillbakablick", Hytenstam & Lindber(red.), *Svenska som andraspråk - i forskning, undervisning och samhälle*. 2:a upplaga. Lund: Studentlitteratur. pp. 743-761.
- Wirén, Eva. 2009. *Mother tongue tuition for foreign background students - what does it mean for their learning? Results and implications from a Swedish study*. Consortium of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and Research in Education in Europe.

○ 웹사이트

www.andrasprak.su.se

www.government.se

www.scb.se

www.skolverket.se

www.skolverket.se/skolutveckling/nyhetsarkiv/2013

www.utbildningsinfo.se

<http://modersmal.skolverket.se/site/sevnska/index.php/178-sensteheter>

<Abstract>

Multicultural language policy in Sweden

Hyeon-Sook Park*

Korea is rapidly changing from a monolingual and monocultural society to a quite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country since 1990. This is mainly the result of labor migration and intermarriage. With the increase of immigrant families,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language education policy including the education of immigrant children. We should recognize the ethnic,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of these children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ensure that they have equal rights in all areas of society. The language education policy based on multiculturalism is very important for the immigrant children to recognize their identity and cultural traditions, to improve their self-esteem and to integrate harmoniously into Korean society and culture. In 2016, over 2.3 million people in Sweden were estimated to have immigrant background, comprising about 23% of the whole population of the country. Sweden has long been conducted bilingual education, for example mother tongue instruction and Swedish as a second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 short description of multicultural language policy in Sweden and thereby to make a

* Dept of Scandinavian Languag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성명: 박현숙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학과

E-mail: hsp@hufs.ac.kr

논문 접수일: 2017.11.17.

논문심사 완료일: 2017.11.17.

수정원고 접수일: 2017.12.24.

게재 확정일: 2017.12.24.

contribution to the multicultural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immigrant children in Korea.

Key Words: Sweden, school system, multi-cultural language policy, mother tongue instruction, Swedish as a second language

